



200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II (육계분야)

- 지난해에 이어...

농림수산식품부

축산종합지도(HACCP)지원사업

장(식육판매업, 보관업, 운반업, 집유업)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·영업자

- 타 농림수산사업(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)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·영업자 제외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축산물 HACCP 적용확대에 따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에 자체 기준서 작성·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·안전성 확보

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(보조금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6	2007	2008		
· 참여농가(업체)수	320	45	80	175	2010. 1	컨설팅 참여농가(업체) 실적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6년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 이후
합계	450	800	1,400	2,560	3,200/년
보조	225	400	700	960	1,200/년
융자	-	-	-	-	-
지방비	-	-	280	640	800/년
자부담	225	400	420	960	1,200/년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

- 닭사육농가 : 축산업(닭사육업)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,000수 이상인 농가
- 식육판매업소 : 영업장의 면적이 33㎡ 이상인 업소
-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보관업, 집유업
-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: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,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,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
- 시·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
 - ※ 사업대상자(사육농가)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

3. 지원대상

- 사업대상자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적
 -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
 -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농장관리제도(GAP)와 농장경영 시스템 운용
 - 영업장(판매, 보관, 운반, 집유)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(SSOP) 작성·운용

II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지원대상 : 축산농가(소, 돼지, 닭)와 축산물작업



- 개별 농장·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·운용지원·위해요소 분석, 중요관리점 설정, 허용한계치 설정, 감시관리체계, 개선조치, 검증방법, 기록유지 등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기준 : 개소당 8백만원(보조 3백만원, 지방비 2백만원, 자부담 3백만원)
-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.

IV.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

- 수요조사 시기 : 2009년 11~12월
- 수요조사 방법 등 : 2009년 농림수산물사업시행지침에 준함.

■ 담당과 : (02)500-2107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물위생팀

축산공제사업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자연재해(풍수해, 설해 등), 화재,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공제 및 보험제도를 이용·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
-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

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6	2007	2008		
• 가축공제 가입률(주지표)	47.8	40.7	43.9	45.4	매년말	(공제가입두수/공제가입대상 가축두수)×100
• 대상축종 증가 수(부지표)	1	1	2	1	매년말	매년도 가축공제 대상축종수

- 2014년까지 가축공제 및 가축보험(이하 '가축공제'라 한다)의 가입률을 60%까지 제고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6년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이후
합계	149,770	48,303	61,631	55,670	
보조	75,057	23,415	28,673	27,835	
자부담	74,713	24,888	32,958	27,835	

II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사업시행자(농협중앙회·LIG 컨소시엄)가 판매하는 가축공제(보험)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가) 지원조건

- 가축공제료 및 보험료(이하 '공제료'라 한다) 지원 : 축발기금보조 50%, 가입자 부담 50%

나) 지원 제한사항

-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공제료 정부지원 제외
- 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 증명번호 기재
-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(시설포함)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. 다만, 가축은 사육시설(건물)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(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)
 - ※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축공제 축사특약에 대한 정부의 공제료 지원 제외

3. 지원대상

-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(이하 '농업인'이라 말한다)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농업인의 공제가입 촉진과 공제로 부담경감을 위해 가축공제(보험) 가입시 납입하는 공제로 일부 지원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축발기금 보조 50%, 자부담 50%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지원한도액 : 예산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공제료의 50% 보조
 - ※ 공제요율은 사업시행자가 농림수산물부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받은 요율 적용
- 사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

구분	기금	축사
가입대상	닭, 오리, 종계, 꿩, 메추리, 타조, 거위	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
가입형태	포괄가입	포괄가입
지원비율	납입 공제료의 50%	

- 축종별 보장내용(시가의 80%~100%까지 지급)

구분	보장범위(보상하는 사고)	보장내용(공제금 지급)	가입대상
기금	• 화재, 풍수해, 설해에 의한 손해	가입금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의 95%까지 보상	제한없음
	•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- 비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	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%까지 보상	
축사	• 화재, 풍수해, 설해에 의한 손해	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	

※ 세부 보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.

IV.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

- 사업시행자는 2010년도 가축공제사업 참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는 농림수산물부에 제출(2009년 4월말까지)
- 농림수산물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(2009년 6월)
- 농림수산물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축공제

가입농업인의 성공사례를 발굴·홍보함으로써 다른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
 - 홍보매체 : 언론(전문지 등), 홍보책자(CD) 등
 - 홍보내용 : 가축공제 가입자의 성공사례 및 가입 방법 등

2.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
 - 담당과 : (02)500-1760 농림수산물부 농업금융과

농축산경영자금지원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·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
- 재해 농·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황기반 구축에 기여

2. 근거법령

-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-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(농림수산물부 훈령 제1286호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 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6	2007	2008(p)		
자금대출률(%)	95.0	95	91.3	97	매년말	대출추진 실적
적시지원율(%)	97.0	96.3	91.6	97	매년말	3,4,5월 대출실적
호당대출금액(천원)	4,500	4,344	4,293	4,400	매년말	대출금액(산규, 연기 포함)

- 중·소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액의 단기(1년 이내) 영농자금 대출사업으로서 자금대출율과 적시지원율의 2009년 목표를 97.0%까지 추진하여 대출만족도를 높여 지원 효과 극대화

- 대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영농주(농가당 1명)로 하며,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
-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
 - ※ 대출포기, 대출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이후
• 농축산경영자금					
- 융자	3,300,000	3,200,000	3,100,000	3,600,000	-

※ 공공자금관리기금 16,341억원, 농협자체자금 19,659억원
 ※ 다만, 3.6조원 중 0.6조원은 배정유보 후 한도소진시 추가배정

II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경종농업 및 과수, 버섯, 원예 등 특작농가, 부업 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·축산농가
- 지원제외
 -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<직업보유자>
 - 농협상근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
 - 기타 직업소득이 3,000만원을 초과하는 자
 - <자영업자>
 - 자영업자(수산업 및 임업 포함).
 - ※ 다만, 농협임직원 이외 사실확인자료 징구는 대출신청인의 자진신고서에 의한. 허위신고 시 자금회수 등에 따른 각서 징취
 - 재해대책자금 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
 - 자금을 농업법인·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·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
 -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
 - 신규진입농은 농지원부(또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, 등기부 등본, 기타 공문서 등), 임차계약서(임차농),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가) 자금별 사업내용

- ① 농업경영자금
 - 지원대상 : 경종농업 및 과수, 버섯, 잡업, 원예 등 특작농가
 - 지원조건 : 1년 이내, 연리 3.0%. 단,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까지
 -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 이내에서 대출
 -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년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
- ② 축산경영자금
 - 지원대상 :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·전업 축산농가
 - 지원조건 : 1년 이내(필요한 경우 1년 범위내 연장 가능), 연리 3.0%
 - 지원대상 축산규모 :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
 - 한(육)우·젓소 : 30두 미만. 단,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
 - 돼지 : 500두 미만
 - 닭 : 1만수 미만
-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<법령에 의한 재해>
 - 지원대상 : 자연재해대책법,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
 - 지원조건
 -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: 피해 규모가 30~50%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, 50%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

- 신규 지원자금
 - 지원한도 :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
키로 결정한 금액이내
 - 대출조건 : 연리 3.0%, 1년 상환(1년 연장 가
능)

〈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〉

- 지원대상 : 시장·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
하다고 판단하는 법령(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
재해대책법)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
 - 기타사고의 유형 : 화재, 정전, 붕괴, 도난, 폐
사 등
 -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
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
 - 피해율이 30%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
 -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
지원제외(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
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)
- 지원금액 : 호당 100만원 ~ 5천만원이내
 -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
에서 제외하고,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
 - 호당 지원금액 : 연간 경영비의 50% 범위 내
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

3.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농업경영자금 : 경종농업 및 과수, 버섯, 잠업, 원
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종자, 비료, 노임 등의 농
업경영비
- 축산경영자금 : 부업축산농가에 대한 사료, 동물
약품비 등 축산경영비
- 재해대책경영자금 : 재해피해농가의 종자, 자재,
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자금명	2009년도 사업비(운용규모)					
	계	국고 용자			지방비	자부담
		계	용자	보조		
농축산경영자금	36,000억원	36,000	36,000	-	-	-

※ 공공자금관리기금 16,341억원, 농협자체자금 19,659억원

-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자체자금을 재원으로
하여 전액 용자로 지원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업경영자금 : 농가당 10백만원 이내(대출잔액
기준)
- 축산경영자금 :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
백만원 이내(대출잔액 기준)
- 재해대책경영자금 : 호당 100만원 ~ 5천만원 이
내 지원
 -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
자에서 제외하고,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
가능
 - 호당 지원금액 : 연간 경영비의 50% 범위 내
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
- 「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」 및 농협 여신관
련 규정 등에 의하되 「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
규정」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
원칙으로 함.

IV.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09년도 사업수요조사

- 해당없음

2. 200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농 축 산 경 영 자 금 사 업 에 대 해 인 터 넷
(farmloan.nonghyup.com), 영농회장 사전교
육, 마을별 반상회 홍보, 일선 농협 소식지 등을
통해 홍보 

■ 담당과 : (02)500-1757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금융과